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)

- ( 제정) 2013.01.09 조례 제2097호
- (일부개정) 2014.01.03 조례 제2135호
- (일부개정) 2015.05.22 조례 제2195호
- (일부개정) 2015.12.24 조례 제2252호
- (일부개정) 2016.12.20 조례 제2312호
- (일부개정) 2017.11.09 조례 제2366호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 례
- (전부개정) 2018.11.15 조례 제2433호
- (일부개정) 2020.12.30 조례 제2611호

## 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정의)
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국가보훈대상자 등"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- 가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2호의 사람
- 나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<개정 2020.12.30. 조2611>
- 2. "보훈단체"란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.

## 제3조(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)

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고성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1. 국경일, 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- 2.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의전상의 예우 실시
- 3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군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게 재 및 소개
- 4.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지역출신 희생、공헌자의 공훈 선양
- 5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
- 6. 보훈관련 기념일, 그와 관련된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, 격려

## 제4조(보훈단체 지원)

군수는 군에서 활동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 ·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 ·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
- 2. 호국 ·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, 전적지 순례비 등

- 3.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
- 4. 호국 · 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사업비
- 5.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

-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(이하 "명예수당 등"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0.12.30. 조 2611>
- 1. 보훈명예수당
- 가. 6.25전쟁 참전유공자: 월 15만 원
- 나. 월남전쟁 참전유공자: 월 15만 원
- 다. 전몰군경의 유족: 월 10만 원
- 라. 전상군경: 월 10만 원
- 마. 전상군경 유족: 월 10만 원
- 바. 무공수훈자: 월 10만 원
- 사. 보국수훈자: 월 5만 원
- 아. 독립유공자 유족: 월 10만 원
- 자. 공상군경: 월 10만 원
- 차. 공상군경 유족: 월 10만 원
- 카. 순직군경 유족: 월 10만 원
- 타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: 월 10만 원
- 2.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: 50만 원
- ②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,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하나만 지급한다.

제6조(지급대상자 요건)

- 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,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②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을 받은 사람 중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로 한다.
- ③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하고, 이는 승계되지 아니한다.

제7조(지급신청 및 지급결정)

- ①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)

- ①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,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 (토요일,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)에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.
-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.
- ③ 군수는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.

제9조(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)

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- 1.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
- 2.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
- 3.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

제10조(보훈명예수당의 환수)

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훈명예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- 2. 제9조의 지급중단 사유가 있음에도 지급된 경우

제11조(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

군수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 등)
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부칙 <2013.01.09. 조 2097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성군 참전유 공자 지원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.

부칙 <2014.01.03. 조 213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05.22. 조 219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12.24. 조 225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6.12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11.9. 조236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11. 15. 조2433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제3조(사망위로금 지급에 따른 경과조치) 2018. 12. 31.이전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<2020.12.30. 조2611>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